



서평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탈식민’과 연결하기: 문제제기 혹은 출발점

—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I·II』

김민환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탈식민’과 연결하기

문제제기 혹은 출발점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I·II』

김민환

서울대학교

1.

이 책 두 권을 단 한 명의 평자가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수합해서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는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 문제, 즉, 각 장(chapter) 사이에 부재하기 쉬운 ‘유기적 연관성’이라는 문제 이외에 다른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 책에서 다루는 소재는 헌정체제, 전쟁, 사상, 정치세력, 친일파 청산 운동, 법원·검찰 제도, 검찰 조직의 구축 및 실천, 민법전의 탄생, 가족법의 변화, 개발정책, 토지소유 제도, 경제 관료, 과학기술, 동원체제, 도시, 대학, 언론, 문학, 성매매 제도 등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또한, 이 책의 필진들 사이에 ‘분과학문적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으며, 「책 머리에」에서 시인하고 있듯이, “연구자들 간에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가 적지 않다(1권, 13).” 무엇보다도, 이 다양한 소재를 다룬 장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영역에서 매우 논쟁적인 글들이어서 그 논쟁의 무게 전부를 한 명의 평자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각 장에 대한 논평은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복수의 다른 평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이런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하나로 모아 단행본으로 편찬한 책 전체의 문제의식 자체이다.

2.

이 책의 제목은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인데, 이 중 ‘식민지 유산’은 ‘원인’에 해당하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는 ‘결과’에 해당한다. 즉, 식민지 유산이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은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민족·민주적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에 집중(『책머리에』 1권, 13)”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민족·민주적 관점’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동시대적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식민지 유산’이 사유되어 온 방식들의 역사를 혹은 논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이해는, 한국은 “친일파라든가 정치, 경제 구조와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일제 잔재라는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바로 그것이 한국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크게 비틀거리게 했다(『좌담』 2권, 435)”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식민지 유산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 문제로 파악하며 꾸준히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제기”하게 된다(『책머리에』 1권, 12). 이 입장은 ‘식민지 근대화 논쟁’ 속에서 ‘수탈론’ 혹은 ‘내발적 발전론’의 입장과 연결된다.

즉, 식민지 시기는 한국의 정상적인 ‘근대’로의 발전을 가로막은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된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해방이 되어서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설 경우, 식민지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해한 남한의 미군정 및 이승만 세력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다. 또한,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급진적 토지개혁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경제구조를 해체한 북한을, 적어도 ‘식민잔재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 소위 ‘뉴라이트’ 담론이다. 이 담론은 “일제강점기와 식민지 유산의 인식에서 민족주의적이고 내재적 발전의 관점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유산—친일 유산을 포함하여—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연속된 측면을 보자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식민지 유산-산업화-민주화-선진화’라고 하는, 한국 근현대에 대한 기승전결식 진화론을 제기하(「책머리에」 1권, 2-13)”고 있다.

이 두 입장에 선 사람들이 소위 ‘식민지 근대화’ 논쟁을 수행할 때, 이 양자의 대립을 넘어서는 필요를 제기하면서 ‘근대성’ 자체를 문제삼는 시각이 출현하게 되었다. 김진균과 이 두 책의 편자 중 한 명인 정근식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수탈론 모두 근대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근대화는 (언젠가는)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 “근대성 자체를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 논의의 지형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¹⁾고 지적했다. 이 논의는 이후 ‘식민지 근대성’이나 ‘식민지적 근대’라는 문

1) 김진균·정근식 편저, “식민지체제와 근대적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p.18.

제들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의 발전을 통해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상호 중첩과 모순이 부각되는 다양한 영역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그것은 상당한 양의 연구 성과로 나타났다.²⁾

그런데, ‘근대성’과 ‘식민지성’이 상호 중첩되고 모순되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는 곳으로 식민지 시기를 파악하게 되면, ‘식민지 이후’라는 시공간 역시 이전 시기와 매우 복잡하고 모순되는 관계를 맺는 곳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식민지 유산’은 앞의 두 입장과 달리 그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연결선으로 나타날 수 없다. 안 그래도 복잡한 ‘식민지적 근대’가 ‘탈식민’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양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로 이 ‘복잡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인 것은 이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식민지 근대성’ 혹은 ‘식민지적 근대’라는 문제를 속에서 ‘탈식민’을 사고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3.

이 책에서 전제하고 있는 ‘민족·민주적 관점’은 우선 뉴라이트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유산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유산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시각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식민지 유산에 대한 ‘부정적 연속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민지의 부정적 유산이 ‘청산’되지 못해 그 이후 한국의 역사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2) 여기에 대해서는 조형근, “비판과 굴절, 전화 속의 한국 식민지근대성론: 구조, 주제, 경험의 삼각구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2009), p.203을 참조할 것.

특히 ‘친일파’라는 인적 청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은 이런 논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아래 분단·단정 세력으로 등장했고, 친미 반공 독재 체제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남한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계급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와 파시즘적 전쟁 동원(전시동원)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능했던 통치 기구와 제도가 해방 이후에도 연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무했던 친일파들이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국가권력까지 장악한 지배층으로까지 발전함으로써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모순들의 발원지로서 기능했다(2권, 237)”는 언급은 너무나 전형적인 전통적 시각이다.

한편, ‘제3부 식민지 유산과 경제 발전의 길항’에 실린 경제학자 3명의 글(10장, 11장, 13장)은 ‘뉴라이트’ 경제학자와의 전면적 대결로 구성되어 있다. 10장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역사적 기원: 식민지 유산 연속설의 비판적 검토」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나온 일제 식민지 유산과 박정희 체제의 경제발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두 가지 논의를 비판한다. 첫 번째 것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사회는 단지 일정한 정도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넘어, 이미 지속 가능한 ‘근대적 경제성장’ 경로에 진입했으며 이 현상이 해방 후에도 연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도적 기초를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경제 성립에서 찾”는 견해이고, 둘째 것은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전시 공업화 체계, 또는 전시 동원 체제가 박정희 개발주의 동원 체제의 식민지적 기원 또는 원형(2권, 14-15)”이라는 견해이다. ‘시장경제’와 ‘전시 동원 체제’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을 주목하지만, 그것들의 기원이 모두 식민지 시기에 있고 그것이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두 견해는 모두 “사실 무근”이거나 “근거가 박약(2권,

56)”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민지 체제가 지속되었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한국인 기업의 발전이 해방 후에 비로소 가능해졌다(2권, 96)”고 강조하는 11장 「공업화 유산」 또한 뉴라이트적인 ‘긍정적 연속설’을 반박하는 ‘단절적 발전설’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13장 「한국 경제 관료의 일제 식민지 기원설 검토(1950~1960년대 전반)」에서는 “한국 경제 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논할 경우, 만약 그 기원을 인적 연계에 국한시킨다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관료들이 집행했던 산업 정책의 온전한 형태는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 정책의 집행자인 경제 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경제 관료 인적 속성에 국한할 경우, 그 타당성이 그리 높지 않다(2권, 165-166)”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문제가 아니라 과학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14장 「식민지 과학기술을 넘어서—근대 과학기술의 한국적 진화」도 앞의 3장과 똑같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의 과학기술이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이 한국의 근대 과학기술 발전에 근간이 되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2권, 194)”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유산에 대한 ‘부정적 연속설’과 ‘단절적 발전설’의 ‘동맹’에 기반하여 뉴라이트적인 ‘긍정적 연속설’을 반박하는 구도를 이 책 두 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식민지적 근대’ 혹은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이후’라는 시공간을 파악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되는 식민지 유산과 조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예를 들면 이렇다. 뉴라이트적인 방식의 ‘긍정적 연속설’과 다른 ‘긍정적 연속설’은 제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식민지 유산의 하나로 ‘저항의 유산’을 상징하는 것에서 일부 발견될 수 있다. 서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저항의 유산 또한 식민지 유산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저항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나 사회 형성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권, 22-23)”는 언급이 보이고, 2권 「좌담」에서 “당연히 저항의 유산을 생각해야 하는데 요, 이것은 내발적 발전론과 직결됩니다. 저항의 유산을 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단절적 동력과 에너지라는 것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일제 지배 체제를 극복하려는 저항적 주체 역량 형성과 민족해방 운동을 저는 ‘저항적 근대성’이라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근대성과 대척에 서는 저항적 근대성을 통한 주체 형성, 민족적이면서 민주공화적인 주체의 자기 형성 과정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사회 운동의 역동성, 민족주의적 지향이 역사의 저변에 깊숙이 깔려 있는데 그런 수맥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를 생각해봐야(「좌담」 2권, 457)”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지배의 유산과 저항의 유산이 맺는 복잡한 관계도 분명 의식되고 있다. “조선 민중이 식민지 지배 권력에 의해 규율당하고 동원당하는 그런 주체로 구성되는 것이 적응적 주체성인데, 이 또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 동원되고 호명되는 주체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중 속에 동원되는 혼과 저항하는 혼, 이 두 개의 혼이 함께 공존하는 복잡한 모양을 가진 것은 아닐까(「좌담」 2권, 457-458)” 라고 하는 발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식민지 유산 속에 ‘저항의 유산’을 포함하는 이런 문제의식은 뉴라이트적인 ‘긍정적 연속설’과는 다른 ‘긍정적 연속설’을 구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지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이라 부를 만한(「책머리에」 1권, 13)” 이런 시각은 뉴라이트적 한국사 인식의 단순한 전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식민지 근대성’ 혹은 ‘식민지적 근대’라는 관점에서 ‘식민지 근대화 논쟁’을 바라볼 경우 ‘수탈론/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모두는 동일한 지평에서 있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연속’의 내용만을 정반대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좌담」에 참여했던 박태균의 “이번의 공동연구 주제가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챕터들이 좀 약한 것이 아쉽군요. 한국 민주주의 진로에 식민지 유산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논의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 유산이 정치체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혁신 운동이나 초기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사람들도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초기 민주화 운동가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느 정도 강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지배의 유산으로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민주화 운동 내부에도 존재한다면, 저항의 유산으로 민족주의가 민주화 운동 내에서도 존재하고 민주화 운동에서도 식민지의 경험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좌담」 2권, 493-494)”한다는 지적에 평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5.

앞에서 이야기한 ‘저항적 근대성’ 혹은 식민지의 ‘저항의 유산’이라는 문제의식 속에는 역시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성공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그 기원을 일제강점기까지 소급해 들어가는 논리인데, 이 때문에 “대한민국사의 밝은 면보다는 주로 반성하고 청산해야 할 어두운 지점들에 초점을 맞추어(「좌담」 2권, 497)” 온 “민주 진보 쪽의 근현대 사관을 이른바 자학 사관이라고 비판(「좌담」 2권, 496)”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대한민국 ‘성공 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도전에 대해 “진검 승부(「좌담」 2권, 496)”를 잘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성찰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반성은 식민지 유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되짚어 보게 한다. 우선, 남한에 비해 ‘식민지 잔재’를 비교적 잘 청산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이다. 가령, “북한은 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했거나 지주계급 등은 국가형성 주체에서 제외한 반면, 혁명을 위한 기지 국가로 만들어 사회적 재생산의 원리를 일제 말기의 전시체제와 유사하게 유지시켰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친일파를 등용한 반면, 북한은 친일파를 제외했다고 하여 식민지 유산이 북한에서 단절된 것인 반면, 남한에서는 연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시각(1권, 29)”이라는 언급은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식민지 근대성’ 혹은 ‘식민지적 근대’라는 틀로 ‘탈식민’을 바라보았을 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은 이 책의 다른 장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고, 「서장」에서만 선언처럼 제기되어 너무 아쉽다.

두 번째 것은, 해방 후 탄생한 헌정 체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재해석이다. 1장 「역동적 저항—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에서 고원은 “해방 후 탄생한 헌정 체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은 헌정체제가 가진 모순적 이중성의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거나, 지나치게 외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1권, 82)”고 비판한다. 고원의 이 말 속에 등장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입장이 뉴라이트적 입장이라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전통적 민족주의의 시각이다. 이 두 입장의 극복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은 이 책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장의 필자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중사회의 두 가지 동력 형태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조선 사회에는 성격이 판이한 두 개의 역동적 대중 정치 운동의 맹아적 흐름이 형성”되었는데, “하나의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매우 저항적인 흐름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일제 식민 지배에 적극적으로 밀착해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확장해 나가는 흐름이었다. 그 같은 이중적 역동성의 구조는 해방 후에도 투영되어 거대한 대중적 정치 경쟁의 공간을 만들어 냈고, 48년 체제의 특징을 강력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해방 공간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식민 지배 하에서 형성된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적응의 전통 사이의 전면적 대결 과정을 거쳐 도달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그 타협이란 “폭력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었으며, “반공 국가연합에 대한 인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부여 및 교환”이라는 “형용 모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지금까지 현정체제는 항상 불안정했고, 그 같은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좌와 우 양쪽에서 마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1권, 83-84). 식민지 유산 중 ‘저항의 유산’과 ‘적응·순응의 유산’이 서로 길항하는 과정으로 한국현대사를 파악하려는 이 시도는 “우리 역사를 사건보다는 국면으로 파악하되 내발론이나 전파론, 이식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좌담」 2권, 494)”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배의 유산’과 ‘저항의 유산’의 역동적 길항 관계가 법적으로 표현된다면, ‘헌법과 보안법의 이중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이 이상적인 민족국가를 상정하고 있었다면, 이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인 국민국가를 상정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1권, 27-28)”는 지적이 그것이다. 전통적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결여 혹은 폄하되었던 제헌헌법의 ‘진보성’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에 의해 (재)발견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 조항 등에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제헌헌법이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간의 조화나 결합의 틀을 가졌던 것은 해방된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적극적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좌담」 2권, 472)”는 발언은 제헌 헌법에 반영된 ‘저항의 유산’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헌헌법의 ‘이상적인 요소’들은 현실적인 국민국가를 상정한 ‘보안법’과 긴장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헌법은 대중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때 “기델 언덕(「좌담」 2권, 467)”이었지만, 그 ‘기델 언덕’을 너무나 자주 무너뜨린 것이 ‘보안법’이었던 것이다. 이 모순이 발현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린 장이 7장 「1945~19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이다. 이 장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사상검찰은 미군정 시기 ‘경찰’과 달리 부정되었다가 여러 ‘굴욕을 보약으로 삼아(1권, 369)” 부활해서 제헌 헌법의 정신과 대결하게 된다.

한편, 제헌헌법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경제 조항이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적 요소이며, 그것의 기원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전쟁 수행을 위한 편제로 재편한 1930년대의 경험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중요한 지적(「좌담」 2권, 468-469)도 있었다. 이 부분은 평자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논평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 터하고 있는 복잡한 ‘식민지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의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6.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 정치, 헌법 등 큰 이야기들 중심으로 언급했지만, 사실 ‘식민지 근대성’의 효과들이 ‘탈식민’의 국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평자가 파악한 이 책 전체의 문제의식에서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이다. 구조나 제도 중심의 접근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지배, 순응, 저항’을 역동적으로 구성할 경우, “지배정책과 민중생활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지배의 균열과 민중들의 자기 재생산에서의 혼종성”³⁾을 보다 풍부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식민지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탈식민’ 시기의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영역 및 대상들을 발굴해 이 시기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4부 사회·문화적 유산—연속과 단절’에 묶인 6개의 장들은 모두 ‘제도’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사실상 이 책에서는 일상 및 문화의 영역들은 제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아쉬운 지점이다. 반면, 이 책의 일차적인 과제가 ‘식민지 유산’이 ‘국가형성’과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복잡하고 다층적인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각 장이 경제, 정치, 헌법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역

3) 정근식, “식민지 일상생활 연구의 의의와 과제,”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문화과학사, 2006), p.14.

에 우선 할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런 아쉬움은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 시기의 일상을 다룰 수 있을 만큼 현재 한국 학계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7.

결국, 이 책 두 권은 논의의 집대성이 아니라(한국현대사 연구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중대한 ‘문제제기’ 혹은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제는 역시 이 책 ‘이후’가 된다. 이 책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향후 많은 연구성과들이 제출된다면, 이 책은 기념비적인 책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흔한’ 논문모음집 중 하나로 잊혀질 것이다. 평자는 이 책이 ‘기념비’적인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명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평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 책에 대한 각자의 ‘서평’을 써야만 할 정도의 가치는 있다는 점이다. 평자가 놓친 다른 중요한 논점을 지적하는 다른 연구자의 서평을 읽게 되길 기대한다. 논의의 전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던가!